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2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정을호·이기헌·김남근

오세희 • 백승아 • 조승래

김준혁 · 김동아 · 차지호

안호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,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기관에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현행법령에는 의원 구성 및 임기 등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되어 있고, 그 외에는 정관 에 따라 정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가 대학교육기관별로 상이하게 구 성·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대학교육기관별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의2).

법률 제 호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의2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1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 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4항(종전의 제2 항) 중 "대학평의원회의"를 "그 밖에 대학평의원회의"로 한다.

- 6.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대학교육기관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 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
-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, 교원, 직원,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되, 동문 및 대학교육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(定數)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.
- 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,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⑤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

- 의 구분에 따라 개의한다.
- 1. 정기회: 학기당 1회
- 2. 임시회: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 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평의원 전원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⑧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의장이 궐위(闕位)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평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⑨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학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 및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.
- ① 회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① 회의는 원격영상회의(평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)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.
- ②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

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6조의2(대학평의원회) ① 대학 제26조의2(대학평의원회) ① ---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 평의원회를 둔다. 다만,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. 1. ~ 5. (생 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<신 설> 대학교육기관 운영상 중요하 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 는 사항 <u>6.</u> (생 략) 7. (현행 제6호와 같음) ② 대학평의원회는 11명 이상 <신 설> 의 평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하 며, 교원, 직원,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 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 되, 동문 및 대학교육기관의 발 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을 포함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 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 수(定數)의 3분의 1을 초과해서 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는 아니 된다.

- ③ 대학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,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<u>④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</u> 한다.
- ⑤ 대학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의한다.
- 1. 정기회: 학기당 1회
- 2. 임시회: 의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- ⑥ 제5항제2호에 따라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의장은고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늦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을 밝혀 각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평의원 전원의 요구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

<신 설>

<신 설>

<신<u>설></u>

<u><</u>신 설>

<신 설>

니하다.

⑧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의장이 궐위(關位)되거나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①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미리 대학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자및 장소 등을 공지하여야 한다. ① 회의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① 회의는 원격영상회의(평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)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.

① 대학평의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대학교육기관의 장에게

<신 설>

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.

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③ 대학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 · 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한다. 다만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<u>(14)</u>	<u>그</u>	밖에	대학판	<u> </u>	<u>회의-</u> -	